

指定圖書制度에 關한 研究

高 聖 秀*

目 次

| | |
|-------------------------|-------------------------|
| I. 緒論 | IV. 指定圖書制度 實施의 改善方案 |
| II. 研究의 理論的 背景 | 1. 指定圖書制度의 管理運營面의 改善方案 |
| 1. 大學教育과 圖書館의 機能 | 2. 指定圖書制度의 內容面의 改善方案 |
| 2. 指定圖書制度 | 3. 指定圖書制度 實施를 위한 動力體制確立 |
| 3. 外國의 指定圖書制度 | V. 要約 |
| III. 我們 나라 大學圖書館 指定圖書制度 | ※ 附錄 |
| 1. 指定圖書制度의 現況 | |
| 2. 指定圖書制度實施의 問題點 | |

I. 緒論

1. 研究의 目的

大學에 있어서 圖書館이 차지하고 있는 位置는 그 大學의 教育目的을 効率的으로 達成하기 위한 教育支援施設의 核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核心이 될 수 있는가의 與否는 첫째, 大學自體의 研究·教育의 樣相과 둘째, 圖書館 自體의 活動에 달려 있다. 大學의 教育이 教室에서 講義와 教科書를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研究가 研究者 個人的 集書단에 의해서 行해진다면 大學圖書館은 大學의 核心으로서 그 役割을 다할 수가 없을 것이다.

現代는 情報의 洪水時代라고 불리어지고, 情報化社會라고 할 程度로 情報

*慶北大學校 圖書館

2. 도서관학 논집

가氾濫하고 있다. 情報의 收集, 蓄積, 傳達機關으로서 圖書館은 學術情報流通體制의 基盤을 이루는 것이다. 情報의 多量化, 多樣化가 進展함에 따라 限定된 範圍의 教科書나 個人集書만으로서는 教育·研究에 充分한 効果를 얻기는 困難하다. 이에 따라 學問의 殿堂인 大學에서는 이 모든 情報를 吸收하여 發展시킬 義務를 가지고 있으며, 特히 大學圖書館은 이를 情報의 收集, 蓄積은 勿論 情報資料를 再組織하여 積極的으로 그 利用을 勸獎하는 知的 資料源으로서, 教育을 遂行하기 위한 動的인 機構로서 運營되어야 한다.

大學圖書館이 動的인 機構로 運營되기 爲해서는 奉仕中心體로서 運營되어야 하며, 이러한 奉仕中心體의 大學圖書館이 되기 爲해서는 여러가지 形態의 奉仕가 있겠으나 指定圖書制度의 運營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特히 우리나라 高等教育改革의 一環으로 實施하고 있는 實驗大學에는 課題圖書制度를 運營하도록 義務化하고 있어 이 課題圖書制度의 効率的인 運營이 大學教育改革에 이바지 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本 論文에서는 大學圖書館으로서의 使命을 다하며, 大學教育改革에 이바지하는 効果的인 機能을 제대로 發揮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指定圖書制度가 効率的으로 運營되어야 한다고 보고各大學의 現行 指定圖書制度의 運營實態를 考察하여 問題點을 把握하고 그 改善策을 講究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本 研究가 試圖하는 目的是

첫째, 大學圖書館의 基本機能을 討하고 大學圖書館이 當面하고 있는 여러 가지 奉仕中에서 指定圖書制度의 運營에 關한 現況을 把握한다.

둘째, 大學圖書館의 指定圖書制度의 內容을 分析하여 그 問題點을 摘出하여 改善策을 提示함으로써 圖書館의 使命을 다 함은 勿論 大學教育改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2. 研究의 方法

本 研究의 方法은 첫째, 指定圖書制度에 關한 理論的 背景을 國內外 各種 文獻을 調査하고, 둘째, 現況把握을 위해서 指定圖書制度運營에 關한 設問

紙를 通해서 資料를 收集하였다.

調查對象은 國立大學校 圖書館 10個館, 私立大學校 圖書館 10個館, 計 20個館에 設問紙를 配付하여 15枚를 回收하고 그 중 指定圖書制度를 運營하지 않는 3個館을 除外한 12個館으로 하였다.

調查期間은 1977年 3月 20日부터 10月 10일까지 實施하였다.

3. 研究의 範圍

本 論文의 研究 範圍는 大學圖書館의 여러가지 奉仕中에서 指定圖書制度 運營에 關한 實態만을 考察하였다.

指定圖書制度의 實態調査는 國立大學校 6個校, 私立大學校 6個校의 圖書館으로 地域別로는 서울地區 5個館 各地方의 7個館에 局限시켰기 때문에 이를 全國 大學圖書館의 指定圖書制度의 運營에 一般化할 수 없을 것 같다.

II. 研究의 理論的 背景

1. 大學教育과 圖書館의 機能

(1) 大學教育과 大學圖書館

大學은 한 나라의 最高教育機關이요, 深奧한 學術을 研究하는 機關이다. 大學이 그 使命을 다하려면 學生들에게 새로운 知識의 習得 및 探究를 위한創造的 活動과 研究하는 習慣을 키워주어 社會에 奉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一般的으로 現代의 大學은 社會的 側面에서 볼 때 다음 네가지로 그 使命을 달할 수 있다. ① 高度의 知的 文化를 傳達하는 일, ② 그것을 創造 發展시키는 일, ③ 科學者, 技師, 教師, 企業體管理者 等 各種 高級人力을 供給하는 일, ④ 國家社會와 人類가 當面하는 諸問題를 解決함으로써 社會改善에 直接 參與하는 일이다.⁽¹⁾

(1) 長期綜合教育計劃審議會, 教育의 現況과 問題點, (서울: 文教部, 1969), p.11.

이와 같이 大學의 本來目的과 使命을 다 하기 위하여 大學이 遂行하여야 할
基本機能을 살펴보면 ① 研究 ② 教授 ③ 人格陶冶 ④ 社會奉仕이다.⁽²⁾라고
하였고 “Higher Education in the South”라는 책에서 大學의 目的을 規定
한 것을 引用하면, 第1項에서 「學生들로 하여금 比較的 多量의 知識과 物的
乃至는 知的 技術을 習得하게 하고 教科目이나 技術을 習得하는 과정에서
繼續的이고 구준한 知的인 探究에 對한 習得을 發展시킴으로써 그와 같은
感覺를 거둘 수 있도록 指導한다」라 하였고, 第3項에서는 「健全한 判斷力を
이룩하는 能力과 함께 知的인 獨立와 創意性을 發展시킨다」라고 하였다. 第
4項에는 「知的인 生活態度를 가르는데 必要한 繼續的인 知的 好奇心과 活動
예로 이끌 수 있는 基本的인 興味와 關心을 북돋아 준다」라고 되어 있다.⁽³⁾
따라서 大學은 恒常 探究精神을 刺激해 주어야 하고 새로운 知識을 探究하
는 研究調查와 知識을 傳達하는 教授의 機能으로서 知的 訓練을 通하여 指
導者를 養成하는 教育의 道場이며 知識의 適用으로 社會改造에 參與하는 社
會奉仕의 機關이라고 하겠다.

大學이 文化的 繼承과 創造, 建造과 發展의 任務이요 真理를 追求하고 人
格을 陶冶하는 教育과 學問의 殿堂이라 하면, 大學圖書館은 그 知的 資源의
保存者와 學問의 偉大한 存繼者로서 大學의 心臟이요,⁽⁴⁾ 積極的이고 強力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奉仕機關일 것이다.

美國의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Committee on
Standard에 나타난 大學圖書館의 機能을 보면, “大學圖書館은 大學社會의
가장 重要한 知的 資源이어야 한다. 適切한 數의 有能한 職員에 의하여 이
루어지는 그 奉仕는 一般的 事業目的을 成就하고 나아가 그 大學의 特殊教
育目的을 達成하도록 調整되어야 한다. 藏書 構成은 最善을 다해 東西洋의
傳來文物을 代表하도록 目標가 되어야 하며, 그 大學의 教科課程에 中心이
되는 特定分野에 置重되어야 한다. 어떤 人爲的 障碍도 圖書館과 教室을 王

(2) 上揭書., p.111.

(3) 柳炳鎮, “大學教育과 圖書館”, 도서관, No.121, (1967. 10. 11 合), p. 4.

(4) 安永柱, 韓國에 있어서 大學圖書館奉仕의 効果에 關한 研究, (서울: 延世大學校圖書館學科, 1965), p.5.

는 圖書館과 教職員을 分離해서는 안된다. 講義計劃을 充分히 補助하는 外에 圖書館은 高度의 研究에 從事하는 先任 教授로부터 高等教育의 正門에 바로 들어선 新入生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利用者의 正當한 要求를 充足하도록 努力하고 一平生을 好む 讀書習慣을 育成하도록 學生들을 刺激하고 激勵하여, 地域社會에서 그리고 大學의 대두리를 벗어나 보다 넓은 學問의 領域에서 그의 特有한役割을 다하도록 努力해야 한다⁽⁶⁾ 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大學圖書館의 窮極的인 目標는 圖書館 그 自體에 있는 것이 아니라 教授와 學生들에게 社會의 奉仕와 教授의 機能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知識獲得을 위한 研究를 돋고 知識의 傳達 및 活用을 위한 奉仕를 위해 圖書館은 必要한 資料를 蘊集하고, 蘊集된 資料를 充分히 利用할 수 있도록 施設을 提供해 주어야 할 것이다.⁽⁷⁾

大學圖書館의 機能에서 黑한 바와 같이 大學의 目的인 教育과 研究를 爲하여 遂行되어야 할 大學圖書館에 共通된 目標는 다음과 같다.⁽⁷⁾고 하겠다.

① 授業의 一部를 構成하고 있는 講義 또는 研究內容에 있는 課題에 對해서研修를 쌓기 爲해 學生에게 閱讀을 課하는 指定圖書制度의 運營.

② 調査研究를 爲해 圖書館資料를 잘 利用할 수 있게 하고 問題解決의 方法과 研究의 方向까지 利用者에게 直接 도와주는 專門的奉仕인 參考業務의 遂行.

③ 資料의 効果的인 利用에 對한 大學圖書館의 올바른 機能을 發揮하기 爲한 利用에 供與된 資料의 準備와 이의 有機的, 綜合的, 合理的 運營으로 學術情報센터로서의 機能를 遂行.

④ 大學內의 文化團體, 研究機關에의 資料援助, 他大學 및 研究機關의 資料交換, 相互貸借, 文獻複寫 등 圖書館相互 協力業務의 遂行 등이다.

이와 같은 廣範圍한 見地에서 質이 높은 教育은 質이 높은 圖書館이 없이

(5)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Standards Committee,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20, No. 14, (July, 1959), p. 274.

(6) 金南碩, "大學教育을 爲한 圖書館의 機能", 釜習副報, Vol. 12, No. 5 (1971. 5), p. 3.

(7) 金萬碩, 大學圖書館의 參考奉仕 促進과 研究指導教授制에 關한 研究,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5), pp. 10-11.

는 不可能하다는 Paul Buck의 見解⁽⁸⁾를 우리는 全的으로 首肯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大學圖書館의 教育的 機能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大學圖書館의 基本的인 役割은 教育的인 것이다. 「實力있는 大學을 만들기 위하여 形式的 學點制를 止揚하고 課題中心制를 實施하여 研究뿐 아니라 授業 助成에도 힘써야 한다」⁽⁹⁾라고 함은 새로운 主張은 아니며 高等教育改革을 위한 討議場에서 자주 舉論되어 왔다. 이는 教室講義에 對하여 學生들에게 몇 가지 主題에 對한 情報를 注入하고 他人의 結論을 紹介하는데 그치는 級의 受動的인 現 大學授業方法에 比해 課題를 通하여 學生들이 能動的으로 自身들의 教育에 參與하게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革命이 아닐 수 없다. 授業進度에 따라 學生들이 課題를 받고 個別的으로 또는 그룹에 끼어서 時間中에 할 討論을 準備하기 위하여 圖書館에서 必要한 資料를 選擇하고, 分析하고, 工夫하는 등의 過程을 通해 分別力과 批判能力을 함양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법”⁽¹⁰⁾도 배우게 된다. 이와 같이 大學圖書館은 教育의 한 能動的인 機構로 運營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美國의 大學圖書館長이나 先任 司書들이 強調하고 있는 하나는 “大學圖書館이 보다 優秀한 教育施設이라는 點이다. 特히 大學四年課程에 存學하고 있는 學生들에게는 教室에서의 學習中에 發見하는 興味있는 知識의 分野에 關하여 그 文獻을 圖書館에 와서 Bibliography를 調査하고, 目錄카아드를 調査하여, 現物을 손에 넣고 不滿足한 點은 다시 文獻의 檢索를 繼續한다. 이같이 하여 學生으로서는 本來부터 社會人이 되어서도 이렇게 하며는 必要한 知識을 必要한 때, 確實하고 迅速하게入手하는가의 訓練을 自己에게 주는 唯一한 學內 機關이 圖書館이며, 그들이 教室에서 習得한 知識을 그들

(8) Logan Wilson, "Keynote Speech, A proceedings to the First Japan-U.S.," Conference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in Higher Education, Tokyo, May 19, 1969, (Tokyo: The Conference, 1970), p.14.

(9) 金相次, “韓國高等教育의 改革方向”, 地域大學의 特性화 및 高等教育 改革方案 세미나主題講演, 文教部教育審議會主催, (서울: 1972.4.28).

(10) Patricia Knapp, "College Teaching and Library," Illinois Libraries, LII (December, 1970), p. 48.

속에서 育成 發展시키는 方法과 手段에 習熟하는 場所가 圖書館이라고 생각 한다. 따라서 文獻의 利用과 活用에 習熟시키는 圖書館이야 말로 教室에 뒤지지 않는 主要한 教育의 場⁽¹¹⁾이라고 하였다. 圖書館利用은 이리한 點에서 하나의 教育方法으로서 그 意義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 全 藏書를 教科課程의 모든 科目와 聯關되고 調査 및 研究面에서 司書는 大學 教授의 一員으로 學生을 指導하고 教育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圖書館은 大學社會의 가장 重要한 知的 資料源으로서 大學教育과 研究活動을 도와주는 教育的 機能을 가지는 奉仕機關이다.

2. 指定圖書制度

(1) 指定圖書制度와 教育課程

高等教育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現代 大學教育의 特徵은 教授의 講義를 爲主로 하는 受動的 注入式 教育이 아니라 學生의 創意力, 批判力, 思考力, 判斷力を 重視하고 教授는 問題를 提示하여 學生自身이 스스로 問題를 解決하도록 하는 自主學習에 重點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學生들이 教授의 講義만 듣고 배우는 소극적인 教育態度를 떠나서 寶範圍한 讀書를 必要로하게 되고, 스스로 問題解決을 위한 道具로서 가장 重要한 것이 圖書館資料가 될 것이며, 이러한 授業의 一部를 構成하고 講義 혹은 研究內容에 있는 課題에 對해서 研修를 쌓기 위해서 閱讀을 課하는 奉仕制度를 指定圖書制度라 하겠다.

이 指定圖書制度는 大學圖書館이 學生에게 對한 圖書館奉仕로서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特히 우리나라의 高等教育改革으로 實驗大學에 課題 圖書制度를 實施하도록 한 大學教育改革의 關係者들의 關心을 모우고 있다.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에서는 指定圖書를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¹²⁾

(11) 加藤龍太郎, “歐米の大學圖書館の現状”, 學術月報, Vol.18, No.12 (1966.3), p.658.

(12) A.L.A.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Chicago, 1943)

- 1) 利用者의 要求에 對하여 一定期間 동안 確保해 놓은 圖書.
- 2) 一般의 貸出을 하지 않고 保留시켜 놓은 圖書의 集團으로 特히 大學과 學校圖書館에서 課題讀書上 必要한 圖書라고 되어 있다.

또한 「教授가 講義에 關連하여, 學生이 必讀하여야 할 것으로 教授로부터 指定되어진 圖書로서 (中略) 이 指定圖書를 學生이 圖書館에서 읽을 수 있도록 準備해 두는 것이 指定圖書制度이다」⁽¹³⁾라고 하였으며, 한편 學生들의 課題履行을 積極的으로 돋기 위하여 科目擔當教授가 課題로 學生들에게 읽도록 指定한 資料(Required reading)만을 모아 놓은 閱覽室을 말하며 短期間에 全 크라스員이 同一한 資料를 찾을 것에 對備하여 相當數의 複本(duplicate Copies)이나 제록스寫本(Xerox Copies)을 마련하는 것⁽¹⁴⁾이라고도 하고 있다.

以上의 定義를 살펴 보면 대 指定圖書는 단지 「읽는 것이 좋다」「읽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추천 圖書가 아니고 大學教育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읽지 않으면 안되는 資料로서 讀書가 大學教育과 直結되어 授業의 一部가 된다⁽¹⁵⁾라고 하였으며, 故캐비티 大統領이 1963年 1月 29일의 議會에의 ベ치지에서 「現在 諸大學의 傾向을 보이는 講義는 겸차 끌어들며, 學生自身이 獨立한研究가 많아지고 있다. 이 結果 大學圖書館은 지금보다는 더 한層 美國學生生活에 있어 本質的인 重要性을 가지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大學에 있어 서의 教育方法의 變革에 基因하는 것이라⁽¹⁶⁾고 하였음을 볼 때 指定圖書制度는 大學圖書館이 教授의 授業計劃에 直接 參加하고 二 授業進行을 돋는 가장 効果의인 奉仕制度로서 大學自體의 教育計劃의 基本이 된다고 하겠다.

大學教育의 目的是 教育課程을 通해서 具現될 수 밖에 없으므로 教育課程

(13) 日本文部省 大學學術局情報圖書館課, “大學圖書館の改善について”, 圖書館雜誌, Vol.59, No.7 (1965.3), p. 262.

(14) 崔或真, “大學圖書館의 教育的 機能”, 도형월보, Vol. 13, No. 6 (1972), p. 5.

(15) 金正昭, “大學圖書館의 指定圖書制度에 關한 研究”, 大邱教育大學論文集, Vol. 9 (1973), p. 197.

(16) 北島政彌, “指定圖書制度について”, 學術月報, Vol. 18, No. 12 (1966.3), p. 696.

이 어떻게 計劃되고 運營되는가 하는 것이 重要的 問題가 된다. 그려므로 大學教育의 發展은 大學教育課程의 檢討와 改善을 위한 努力에서 期待할 수 밖에 없다.⁽¹⁷⁾ 그러나 大學의 教育課程은 一般的으로 過去 指向性을 띠고 있다. 이것은 全世界的인 傾向이기도 하지만 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傾向이 濃厚하다.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大學教授들의 意識構造가 大體로 過去指向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 大學改革의 關鍵은 教授指向의 教育課程(Faculty-oriented Curriculum)으로 부터 教育課程指向의 教授陣(Curriculum-oriented Faculty)으로 轉換하는 것이라고 喝破한⁽¹⁸⁾ 바와 같이 大學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하여 文敎部에서 1972年 6月 27日에 發表한 「大學教育의 改革方案」에서 長期改革案中의 하나가 「教育課程의 改善과 教育方法의 刷新」이라는 것을 보아도 大學教育에 있어서 教育課程이 中요한 比重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오늘의 大學生들에게 期待되는 未來에 있어서의 役割을 생각할 때, 未來指向性的 教育課程이 內包하여야 할 基本的 屬性에 對하여 살펴 보며⁽²⁰⁾는

1) 問題解決의 能力

問題解決의 範圍는 결코 教科書上에 있는 過去의 問題에만 局限되어서는 안되겠다. 教科課程의 一部分으로나 새로운 問題에 對한 精神的인 開放性이 強調되어야 하겠다. 可能한 限 現場實習이나 應用프로젝트 같은 方法을 通해서 實地 問題解决에 對한 體驗乃至는 接近을 提供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

2) 自己表現의 體驗

問題解決의 能力を 올바르게 滋養하는 過程에서 學生은 자연히 自立的으로 思考하는 自己를 發見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教育的으로 매우 重要的

(17) 洪香姬, 大學圖書館 指定圖書制度에 關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5), p. 8.

(18) 李漢彬, “大學의 教育課程과 社會變動의 要請”, 大學教育課程 改善에 關한 研究報告書 III, (文敎部 教育政策審議會, 1977.6), pp. 6—7.

(19) 洪香姬, 前揭書, p. 9.

(20) 李漢彬, 前揭書, pp. 7—9.

배움의 體驗이다. 自己發見과 表現에 關한 한, 教育課程의 內容보다는 學習指導의 方法이 더 중요할 줄 생각한다.

教授方法 중에서 實驗, 討論, 公開發表, 事例研究, 現場實習 등이 自己表現의 體驗을 돋는 것이라는 것은 疑心할 여지가 없으며, 教育課程을 編成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方法을 어떻게 加味하느냐 하는 것이 未來指向性을 더 하는데 중요한 課題가 될 것이다.

3) 社會目標에 對한 價值觀의 確立

大學生活은 人生觀이나 價值觀의 確立 없이 지내버린다면 그것은 個人으로 보나 社會로 보나 空然한 時間浪費일 것이다. 그리고 大學의 教育課程이 直接 間接으로 이런 것을 賦與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空虛한 科目의 羅列에 不適할 것이다. 오늘 大學生들은 앞으로 20餘年 後인 21世紀初에 가서 그들의 活動盛期를 맞이할 사람들이다. 그때까지 知識과 技術面에서는 繼續教育을 通過해서도 不斷히 補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브다 나온 社會를 建設하고자 하는 價值觀의 確立은 적어도 大學時節까지에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以上의 세 가지 未來指向的in 屬性을 어떻게 教育課題라는 構造的 媒體속에 反映하느냐 하는 方法論的in 問題이다. 아무리 훌륭한 教育目標가 設定되고 價值있는 學習內容이 選定되었다 하더라도 그 教育方法에 따라서 學習効果는 左右되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의 제반 教育方法과 學習活動의 大部分은 이러한 教育目標에一致하지 않는다. 中央教育研究所의 調査에 의하면 現在의 教授方法으로는 口頭說明 為主나 筆記 為主의 講義가 代表의in 方法으로 採擇되어 있고 (教授反應=62.48%, 學生反應=60.97%), 質議應答, 討論為主나 作業, 實驗實習 등 多樣한 教授方法을 採擇한 科目은 極히 制限되어 있는데(教授反應=23.93%, 學生反應=24.64%) 그것도 大部分의 技術科目 및 實驗實習을 不可避하게 하는 自然科學系列에서 볼 수 있는 現象이다. 教授活動의 延長이라고 할 수 있는 課題의 性格을 보더라도 參考資料를 읽고 要約하거나 総合하는 것이 約 半數를 차지하고 있다(教授反應=48.92%, 學生反應=53.57%

%), 그리고 創意性과 應用力을 살려서 研究하는 것은 극소수라고 한다(教授反應=13.04%, 學生反應=15.80%). 또한 學生이 參與하도록 勸獎하는 科目(34.2%)보다 勸獎하는 일이 별로 없었던 科目(49.6%)이 더 많고 오히려 學生參與를 抑制하였던 科目(16.20%)이 많다.⁽²¹⁾ 그러므로 說明式 혹은 筆記式의 講義爲主의 教授方法을 시정하여 討議, 調查研究 및 實驗實習 등 學生들이 積極的으로 參與할 수 있는 多樣한 教授方法을 活用할 것을 提案하고 있다.

大學教育 改革事業을 推進하고 있는 各大學의 計劃을 보며는 「從來의 注入式 教育을 止揚하고 學生 스스로가 공부하는 研究課題制度로 指向한다. 새로운 制度에 適應한 教科書 및 參考書의 改編을 講義前에 完了하고 講義에는 반드시 教科書나 參考圖書를 使用하며 紹介한다」⁽²²⁾라고 한 教科課程 改正 實施 方案이나, 「教材로서 正 및 參考教材의 選定없이는 講義設定을 認定하지 않는다. 教授內容 및 方法을 學生들이 自力으로 學習할 수 있도록 改革한다」⁽²³⁾라고 한 實驗大學運營의 設定된 先行與件과 「研究課題 中心教育—從來의 教授 中心의 講義式 및 筆記式 授業으로 因한 學生들의 受動的인 學習態度를 止揚하여 討論 및 세미나 方式을 採擇하여 能動的으로 授業에 參與토록 하고 簡單한 테스트와 筆記宿題를 자주 賦課하여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와 指定圖書制度活用」⁽²⁴⁾이라는 教育方法 提示 및 教育方法의 改善計劃에서의 「課題圖書 確保方案」⁽²⁵⁾等은 現代 教育方法에서 自發性의 原理에 立脚해서 學生 스스로 學習하고 教授는 學生을 도와주는 役割을 하는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大學教育改革에 있어서 教育課程 改善이나 教育方法의 改善에 있어서도 이 指定圖書制度의 運營이야 말로 반드시 導入되어야 할 大學教育의 効果的

(21) 中央教育研究所, 大學教育內容에 關한 総合的研究: 大學教育課程에 關한 研究, (서울: 中央教育研究所 1967), pp. 130—151.

(22) 연세대학교,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실험대학 운영의 계획과 운영, (1973), p. 12.

(23) 仁荷大學校, 實驗大學運營과 實際, (1973), p. 21.

(24) 전남대학교, 실험대학 운영의 계획과 실제, (1973), p. 3.

(25) 경북대학교, 실험대학 및 능력별 출입제 시행 신청서, (1975), p. 17.

12 도서관학 논집

이고 바람직한 奉仕制度라 할 수 있겠다.

(2) 指定圖書制度의 効果的 運營方案

指定圖書制度는 本來 圖書館活動에 있어서의 한가지 方式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大學에 있어 教育方法의 問題이라고 하겠으며 學問하는 學生들에게 圖書館이 提供하는 重要한 奉仕라 하겠다. 그러므로 教授들이 講義의 内容에 따라서 開講에 앞서 指定圖書를 圖書館에 備置할 것을 要求하며, 圖書館에서는 一般圖書와 區別하여 配架하며, 原則적으로는 開架閱覽方式에 複本을 準備하여 一般의 貸出을 禁止하여 오로지 學生의 利用에 供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教授는 指定圖書의 内容을 勘察하면서 講義 等을 하게 됨으로 圖書館 自體가 于先 잘 運營되도록 準備되어야 하며, 教授 學生 및 圖書館의 三者가 一體的 關係를 가지면서 教育效果를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에 要求되어지는 内容을 보여는,

1) 指定圖書制度의 運營을 위한 必要要件⁽²⁶⁾

① 教授는 每學期初 講義始作 前에 講義計劃書를 發表하고 授業進行에 必要한 指定圖書目錄을 提出하여야 한다. 圖書館은 教授로부터 申請받은 目錄을 既存圖書와 新規購入圖書를 區別하여 빠른 期間內에 準備하도록 計劃을 세워야 한다.

② 教授는 指定圖書目錄中 必讀書와 補助資料를 區別하여 作成하여야 한다. 이것은 같은 資料의 重複이나 貸出期間을 定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③ 必讀書의 複本數는 Reading assignment의 性格, 期間, 分量, 學生數를 考慮하여 學生들이 定해진 期間內에 必要로 하는 圖書를 읽을 수 있도록 充分한 複本을 準備하여야 한다.

④ 學生들이 讀書를 通하여 훌륭한 結果를 얻으려면 required reading은 講義와 discussion을 서로 連絡지을 수 있는 資料이어야 한다.

⑤ 指定資料는 單行本 外에도 모든 資料를 다같이 包含시킬 수 있나.

(26) 洪香姬, 前揭書, pp. 13—14.

⑥ 教授는 學生들에게 指定圖書의 重要性과 그 價值를 認定하도록 하고 著者에 關한 說明도 하여 講義內容과 連絡을 지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指定圖書의 効果的인 利用을 위하여 指定圖書를 위한 場所를 따로 마련하고 때에 따라서는 專門司書를 必要로 할 境遇도 있다. 指定圖書室이 獨立되지 않은 境遇에는 閱覽係나 參考係에서 取扱한다.

⑧ 指定圖書 購入費는 이를 豫算에 包含시키도록 한다.

⑨ 보다 効率的인 指定圖書制度 實施를 위하여 現行되고 있는 指定圖書制度를 恒常 再評價하여야 한다.

2) 教授와 司書와의 協力

指定圖書制度를 成功的으로 이끌기 위하여는 大學當局, 教授 및 圖書館의 相互協力이 있어야 한다. 教授는 圖書館의 機能에 對해서, 그리고 指定圖書를 맡은 專門司書는 相互理解가 必要하게 되므로 그 大學의 現行 教育課程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教授들과 啓蒙 없이 接觸하여 그들의 關心이 무엇인지를 把握하여야 하며, 또한 司書는 다음과 같은 準備를 하여야 할 것이다.⁽²⁷⁾

① 教授들과 個人的으로 친히 알고 그들의 獨特한 教授法에 對하여 가급적 많이 알아야 한다.

② 現行 教科課程을 잘 理解할 뿐만 아니라 修正이 있을 때마다 즉시 通報되어 새 教科課程의 要求에 副應하는 効果的인 圖書館奉仕를 準備하여야 한다.

③ 機會 있을 때마다 教授들에게 授業過程에서 圖書資料를十分 利用하도록 說得하여야 한다.

④ 어떤 科目 擔當 教授가 使用하고 있는 資料를 알면 學生들이 그것을 要求할 때 바르게 利用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또 代用 可能한 資料도 準備할 수 있다.

⑤ 새 資料와 새 奉仕業務에 對하여 迅速히 教授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27) 金正昭, 前揭書, pp. 7-8.

14 도서관학 논집

이 있어야 한다. 定期受書案內, 注文圖書到着通知, 校內刊行物의 圖書館網電話, 訪問 등 알리는 方法은 여러 가지가 있다.

⑥ 學生들이 研究를 위해 關聯參考資料를 利用할 때 正確하고 親切한 協調를 提供하여야 한다.

⑦ 어떤 클래스에 有益하리라고 생각되는 特殊資料를 發見하면 지체없이 擔當教授에게 알려 주어야 많은 教授들이 圖書館의 잠재적 教育能力을 충理解하고 또 많은 司書들이 위에 열거한 方式에 따라 教授의 要求에 副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要컨대 教授와 司書가 서로 相對方이 하는 일을 理解하고 共同目標을 意識하면서 協力함으로 成功을 거둘 수가 있다.

3) 複本의 問題

指定圖書는 一定期間內에 많은 學生의 利用이 集中되기 때문에相當數의 複本을 準備하지 않으면 안된다. Lansberg는 複本數는 Class의 學生數, 宿題의 길이와 目的, 讀書를 하도록 許諾된 期限, 複本의 價值 등에 따라 決定되어진다.⁽²⁸⁾라고 하였다. 이 때에相當數의 複本이라 함은 大體 몇권이어야 하는가 이 点에 關하여서는 他大學에서의 實際의 經驗에 비추어 一定의 比率로, 예컨대 學生 10名에 1冊, 또는 8名에 1冊이라고 定하고 있는 境遇와, 複本決定에 必要한 基礎的 資料를 算出하여 그것을 基礎로 하여 算定하는 方法, 또는 貸本圖書(rental book) 方法에 의하여 必要한 期間동안 싼 요금으로 學生들에게 빌려주는 方法도 있고, 指定된 部分이 짧은 것은 그部分만을 複寫하여 배포하는 方法도 있는데 이것도 指定圖書와 그 目的은 같은 것이다.

例컨대 Lansberg의 調査報告는 뉴 잉글랜드地方 大學의 指定圖書室을 調査한 것으로, 14館 中에서 6館은 學生 10名에 1冊, 4館은 6~8名에 1冊, 나머지는 5名에 1冊, 5~10名에 1冊, 8名에 1冊, 8~10名에 1冊이라고 하는 것이 각 1館씩이라고 報告하고 있다. 또한 Lyale 大學圖書館에서는 모든 指

(28) W. R. Lansberg, "Current Trends in the College Reserve Room,"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11, No. 2 (1950.4), p. 122.

定圖書는 複本은 2卷만을 準備하고 그 以上은 學科에서 提供하여야 한다⁽²⁹⁾ 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數의 圖書館에서는 複本購入에 圖書購入豫算을 消費하기 싫어하는 傾向이 있고, 어떤 大學圖書館에서는 複本購入費의 一部 또는 全額을 使用하는 클래스 學生 全員에게 分擔시키는 境遇도 있다고 한다. 指定圖書에서 除外되며는 많은 複本圖書가 利用되지 않으며 死藏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指定圖書가 授業上 꼭 必要한 資料라고 한다면 複本을 確保하는 問題는 圖書館에 一次的인 責任이 있으므로 各 學科 또는 教授의 要求, 學生數에 따라 그때의 實情에 맞추어 가장 알맞은 方法을 採擇하고 學生들에게 되도록 많이 읽는 機會를 주도록 弹力性을 가지고 運營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複本數를 基礎的 資料에 의해 決定하고자 하는 Margie M. Helm의 研究가 興味가 있어 紹介를⁽³⁰⁾ 한다.

다음 資料를 複本數 決定에 必要한 要素라고 한다.

I. 定數的 data

(a) 平均의 學生이 1時間當 읽을 수 있는 page數

II. 大學마다의 特定의 data

(a) 1回의 貸出閱覽時間의 平均

(b) 1日 혹은 1週間當의 指定圖書의 平均 貸出閱覽冊數

III. 同一大學內에서도 學科마다 다른 變數

(a) 그 學科의 學生數

(b) 限定期間에 읽을 수 있는 page數

(c) 完讀까지의 許容될 期間

(d) 讀書하여야 할 圖書의 title數와 課題의 種類

Helm은 上記의 data 혹은 要素라고 할 수 있는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關

(29) Lansburg, *op. cit.*, p.122-123.

(30) 濑本孝久, “リザーヴ・ブック・システムと 指定圖書制度”,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8 (1970), pp.162-163.

係가 있다고 보았다.

學科學生數를 a

읽어야 할 page數를 b

平均的 學生이 1時間當 읽는 page數를 c

1回의 貸出閱覽時間平均을 k_1

어떤 期間內에 期待되는 貸出數를 k_2 로 하면 學科의 學生이 읽어야 할 page數의 合計 = $a \times b$

平均的으로 學生이 1回의 貸出閱覽時間中에 읽는 page數 = $c \times k_1$

學科의 全學生에 對해 必要한 貸出 閱覽回數 = $\frac{a \times b}{c \times k_1}$

必要로 하는 圖書의 種數 또는 複本數를 x 로 하면 $x = \frac{a \times b}{c \times k_1 \over k_2}$

이 境遇 x 는 複本數의 境遇 뿐만 아니라 폐에 따라서는 題目이 다른 圖書의 數를 나타내는 境遇에도 使用된다. 만일 課題가 特定한 1冊의 圖書라면 複本數를 意味하고 혹은 數種의 圖書가 列舉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1冊을 읽으면 좋을 境遇에는 題目數 혹은 複本數의 合計를 意味한다.

그러나 이 理論的인 것 같이 보이는 複本數 算出의 公式은 반드시 正確한 數價를 算出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指定圖書制度의 運營方法

指定圖書는 利用度가 높아서 一般圖書에 比하여 貸出面에서 制限을 加하여, 公平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配慮하는 것이 普通이다. Lyle은 “學生의 利用에 편리하고 教育的 効果를 促進할 수 있는 方法을 選擇하여야 한다”⁽³¹⁾고 主張하고 있다. 規模가 작은 圖書館에서는 場所와 職員이 모두 不足하므로 指定圖書閱覽室이라고 別途의 방이 없고 指定圖書들을 貸出臺 뒤의 書架에 두었다가 貸出業務 틈틈이 내주는 경치기 奉仕일 수도 있지만 美國의 큰 大學圖書館들은 여리개의 방을 割當하여 다음 세가지중 한 方法으로 資料를

(31) Guy R., Lyle,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ies*, 3rd ed. (New York: Wilson, 1961), p. 145.

排列한다.⁽³²⁾

(1) 閉架制：모든 指定圖書를 貸出臺 뒤에 두고 請求에 따라 司書가 資料를 내어 준다.

(2) 開架制：모든 指定圖書를 방주 위의 書架에 排列하고 學生들이 自由로이 빼어 보게 한다.

(3) 混合式：課題로 주어 읽으라고 한 資料 即 要請이 많은 資料엔 閉架制를 適用하고 補充讀書를 위해 내놓은 資料에 開架制를 適用하는 方式이다
“위의 세가지 方法中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에 對해선 論難이 많으나
美國의 큰 大學圖書館 大部分은 混合式을 採擇하고 있다.”⁽³³⁾ 指定圖書貸出을 畫間에는 館內에 限하여 貸出時間은 普通 두 時間이다. 閉館時間엔 館外로 貸出하여 다음날 開館時間까지 집에서 읽을 수 있다. 指定圖書閱覽室에 내놓은 補充資料의 貸出期間은 普通 3日間 또는 一週間이다. 貸出時間(또는 期間)이 차면 指定圖書를 즉각返納케 하기 위한 手段으로 比較的 많은 罰金을 課하는 것이 常例이다. Lansberg의 大學指定圖書室에 關한 調査報告에 의하면 32個 大學圖書館中에서 10館은 閉架式, 5館은 開架式, 17館은 折衷式을 擇하고 要求度가 높은 圖書는 貸出臺를 通하여 貸出하고 있다⁽³⁴⁾고 하였다.

그리고 指定圖書의 配架는 學生들이 利用하기 便利하도록 排列하는 것이 原則이겠으나, 日本圖書館協會의 調査에 의하면 “學科別이 보다 많고(35.0%), 이어 教官別(31.6%)로 되어 있다.”⁽³⁵⁾ 이 點에 關하여 Lyle는 “開架式의 指定圖書는 먼저 學科別로 區分하여 그 중에서 다시 科目別로 排列하고 各科目別 中에서는 著者의 ABC 順으로 排列하는 것이 普通이다.”⁽³⁶⁾라고 하였다.

(32) Helen Sistor, "Simplified Circulation Records for a College Library," *Library Journal*, LXXIII (1963.2), p. 181.

(33) Lyle, *op. cit.*, p. 120.

(34) Lansberg, *op. cit.*, p. 121.

(35) 北島武彦, 前掲書, p. 697.

(36) Lyle, *op. cit.*, p. 125.

위의 같은 여러가지 條件을 갖추고 指定圖書制度를 運營하면 보다 効果的인 結果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3. 外國의 指定圖書制度

(1) 指定圖書制度의 起源

指定圖書制度가 언제부터 始作했는지 明確하지 않으나 처음으로 이 制度가 採用된 것은 19世紀에 하바드大學이라고 한다. 이에 對하여 同大學圖書館副館長 Dauglas W. Bryant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³⁷⁾

「大學의 教授方法에 根本的 變化가 있었다. 學生이 各者가 所有하는 한두 卷의 教科書에 의례 이루어지고 있는 講義形態는 이미 過去의 것이 되었다. 重複部數를 包含하는 多數의 參考書가 “指定書”로서 特히 備置되고 그것을 읽는 것이 講義의 一部分으로서 要求되어지는 形態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教授는 이에 指定書를 特定의 것에 限하는 것을 避하고 廣範한 特定書의 目錄을 주어 그 중에서 學生自身이 資料를 찾아서 專門的 report를 作成하지 않으면 안되는 課題로 되어서 있다.」 이 Bryant의 말은 하바드大學이 指定圖書制度를 採用하고 發展시킨 經緯를 端的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同時에 이 制度의 本質을 指摘한 것이다.

하바드大學의 記錄에 依하면 처음에는 有料貸出文庫의 形態였던 것이 後에 指定圖書制度로 變한 것으로 되어 있다. 1784年 11月 2日에 開催된 하바드의 大學評議員會의 記錄에 의하면 利用度가 높은 種類의 圖書에 關하여 다음과 같은 規定을 만들었다.⁽³⁸⁾

(돗드릿지講義錄과 함께 헤브라이語文典의 1學期間 貸出料金에 對하여)

돗드릿지博士의 學部學生用 講義錄의 1學期間貸出은 1冊當 1실링 6펜스로 定한다. 또한 헤브라이語文典은 4펜스로 統一한다.

(37) ブティアント D.W., 大學圖書館の將來を講る, (東京大學校附屬圖書館, 1963), p.4.

(38) Louis, Shores, *Origins of the American College library, 1638-1800* (Hemdon, Conn.: Shoe String Press, 1965) (repr. from the 1934 original ed.), p.215. 原典은 Harvard University. College book, No.8, p.178.

이것이 指定圖書와 같은 概念으로 變한 것에 對해서 하바드大學의 記錄에는 神學敎授였던 Edward Wigglesworth가 1784년 11月 16日에 大學當局에 提出한 것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神學의 講義 2科目과 練習 1科目을 합하여 모두 3科目을 擔當하고 있었지만 神學을 專攻하는 學生뿐만 아니라 法學, 心理學, 政治學 등을 專攻하는 學生에게도 이 講義만을 하지 않고 약간의 質問에 答하는 것만으로는 基督敎의 教理를 說敎할 牧師가 되려는 學生에게는 充分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將來에는 이 두個의 上級課程을 履修하는 學生은 火曜日에 있는 講義에도 出席할 것과 그 講義의 內容은 教授가 言及하는 圖書의 章, 節을 읽고 宿題로 旣部分은 자세히 注意를 하여豫習해 올 것을 提案하였다.

이 提案이 얼마만큼 實現되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Wigglesworth 教授의 提案은 制度로서 볼 때 圖書館이 管理하는가 또는 教授가 管理하는가의 差異는 있다해도 指定圖書制度의 初期形態라고 볼 수 있다.

日本의 大學圖書館에서의 指定圖書制度는 아마도 東京大學이 昭和 4年에始作한 것이 처음이라 하겠다. 同大學에서는 大正 14年 當時의 館長 姉崎正治 教授가 立案·檢討되어 本館 復興直後의 昭和 4年에 實施되었고,⁽³⁹⁾ 그後 1952年 文部省에 國立大學圖書館 改善研究會를 設置하여 國立大學圖書館에 對한 研究를 하였다. 1953年 1月에 刊行된 「國立大學圖書館改善要項 및 解說」第6條 2項에 의하면 大學圖書館의 學生에 對한 運營改善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였다.⁽⁴⁰⁾

圖書館內에는 따로 學生을 위한 指定圖書를 設置하여 공부하는데 必讀의 基本的 參考書를 具備하여 自由로이 閱覽하게 하고 이려한 圖書는 必要에 따라 같은 冊은 相當部數 準備하도록 할 것이라 하고, 또한 同改善要項解說에 의하면 指定圖書室이란 教授의 講義와 關聯하여 學生들에게 꼭 읽힐 文獻을 圖書館내에 別置하는 圖書室로서 圖書館은 當該 教授의 要求에 의하여

(39) 北島武彦, 前揭書, p. 696.

(40) 澤本孝久, 前揭書, p. 171.

一定期間동안 備置하고 그 期間中에는 貸出을 禁止하며 複本을 準備할 必要가 있다. 이와 같이 學生들의 공부에 편의를 提供함으로써 教授, 學生, 圖書館의 一體的 關係가 確立되어 진다고 하였다.

昭和 30年(1955)末 特히 關西地區 國立大學의 圖書館界에서 指定圖書에 對한 強力한 要望이 있음에 따라 文部省에서도 指定圖書制度 實施를 위한 豫算을 大藏省과 折衷한 結果 昭和 41年度부터 그 實現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當初의 豫算이 大藏省의 查定에 의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比較的 整備되어 있는 大學부터 年次의 으로 이 制度를 實施하도록 하고 第一次年度에는 4年制大學 10個校와 短大 1個에 각각 入學定員에 比例하여 指定圖書 購入費를 配當하였으며 2年間으로 그치고 每年 새로이 約 10個校의 大學이 配當되어 져 왔다. 國立大學에의 指定圖書制度의 實施는 豫算配當에 의한 것 이기 때문에 많은 國立大學圖書館이 指定圖書制度에 關心을 갖고 豫算配當이 없는 大學圖書館에서도 自費로 實施하는 傾向을 造成하였다.⁽⁴¹⁾

(2) 美國의 指定圖書制度

1) 하바드大學 라몬트圖書館⁽⁴²⁾

美國에서 1948년에 最初로 開館된 學部學生用圖書館이라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 圖書館에서는 最初는 必讀書만을 指定으로 하고, 則次의인 圖書는 一般圖書의 一部로 하는 方針이었다. 指定圖書로서 購入된 圖書는 언제까지나 指定圖書로서 取扱되어, 指定圖書에서 除外되는 境遇은 閉架指定에서 開架指定으로 옮겨진다. 이때에 만약 많은 複本이 있으면 2~3部만 開架指定의 排架하고 餘部는 地下倉庫에 保管한다. 開架指定圖書는 主題別로 區分한 後 著者名順으로 配列한다. 複本數는 嚴密한 方針은 없으나 一般的으로 10名에 1冊 比率이며 40冊 또는 50冊을 最大限으로 하고 있다.

1962年에 閉架指定圖書 1,250冊, 開架指定圖書 10,475冊, 1963年에는 閉架 13,045冊, 開架 9,246冊, 種數로는 2,500~4,000種이었다. 指定圖書의

(41) 澤本孝久, 前揭書, pp.171~172.

(42) Irene A., Braden, (Chicago: ALA, 1970), pp.18~19, 24.

貸出閲覽은 1948~49年の 51,117冊을 最低로 하여, 1954—55年에 312,776冊의 最高에 達하였고 그 後에는 24萬冊에서 30萬冊의 사이를 維持하고 있다.

2) 미취간大學學部學生圖書館⁽⁴³⁾

州立大學의 學部學生圖書館의 先驅格이며 1957에 新設되었으며, 初年度 538種 1,268冊의 指定圖書를 가지고 始作하여 다음 해에는 1,157種 2,368冊을 新規購入하고 있다. 그後 每年 3,000 가까운 種으로 7~8,000冊 程度를 指定圖書로서 新規購入하고 있다. 閉架式으로 하고 있는 指定圖書는 1958—1959年度에는 2,504冊이었던 것이 1961—1962年度에는 3,627冊에 達했고, 1964—65年에는 2,815冊으로 내려갔다. 閉架式에서만도 貸出閲覽은 1964—65年에 58,184冊에 달하고 있다. 開架式도 包含하여는 1964—65年度의 全體의 指定圖書는 12,952種, 34,079冊으로 되었다.

複本은 初年度 必讀書는 學生 15名에 1冊의 比率로 購入하고, 副次的 讀書物인 境遇에는 1冊만을 購入하도록 되어 있으나 적은 수의 學科에서는 不充分한 境遇가 있어 10名에 1冊의 比率로 고쳤다. 또한 그後 學生數가 많은 科目에 對해서는 10名에 1冊, 學生數가 比較的 적은 科目에 對해서는 10名에 1冊, 萬若 圖書館에 25部 以上 있는 境遇에는 14名에 1冊 比率로 50部 또는 그 以上 保有할 境遇에는 購入하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은 雜誌, 論文에 對한 指定要求가 增加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許可를 받지 않으면 多은 複寫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記事が 실린 雜誌의 特定號를 多數購入하든가 아니면 複製許可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3) 사우스·캐롤라이나大學學部學生圖書館⁽⁴⁴⁾

여기의 學部學生圖書館의 基本構想은 하바드大學의 라몬드圖書館에 類似하다. 圖書館이 1959年に 竣工되었을 때는, 全藏書는 150,000冊에 不過했으나 1964—65에는 360,000餘冊이 되었다. 最初의 指定圖書의 90%는 本館에서

(43) *Ibid.*, pp.47—49, 52—53, 58.

(44) *Ibid.*, pp.71—73, 75.

借用한 것에 있지만 그 후 購入되는데로返納하여現在는 3%만이借用된 것이다.一般的으로學生 8名에 1冊의比率로複本이備置되어 있으나 40名을 넘는學科에對해서는 절차比率을낮추고 있다. 또한指定으로要求되어진 것은最小限 2部를購入하게 되어 있고 特別한境遇以外는最大限으로도 20部를 넘지 않도록하고 있다. 新入生에必須科目인 2—3의은學科目的境遇まで 50部까지购入하는 것이다.

閉架式指定書籍는 3,000冊程度로貸出閱覽은 1週間, 3日間, Overnight loan, 館內閱覽으로 되어 있다. 大學院生을 위한指定圖書도 學部學生과 마찬가지로 學部學生用圖書館에서取扱하고 있다. 闭架式指定圖書의利用은 館内外를 합해서 1959—60年度에 14,216回, 1964—65年度에 28,929回로서 모두가全體圖書貸出數의約半數에達하고 있다.

(3) 日本의指定圖書制度

文部省의昭和42年度(1967)全國大學圖書館實態調査에 의하면 國立大學 71校, 公立大學 37校, 私立大學 235校, 計 343校中指定圖書制度를 實施하고 있는大學은總 168校(48.97%)로 되어 있고 이를 다시設置者別로 보면 國立大學 82.4%, 公立大學은 41.7%, 私立大學 39.0%가指定圖書制度를 實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⁴⁵⁾ 그리고指定圖書의利用은平均으로 國立大學에서는 延 6,782名, 10,704冊, 公立大學은 2,241名, 2,527冊, 私立大學은 6,368名, 9,624冊으로 되어 있다.⁽⁴⁶⁾指定圖書의冊數가一校平均國立 3,280冊, 公立 496冊, 私立 2,184冊임을 볼 때, 國立大學의指定圖書 경우冊數는많은데比하여利用率이 가장적게 나타났다.

1) 國際基督教大學圖書館⁽⁴⁷⁾

이大學圖書館에서는創立의當初부터美國式의指定圖書制度를採用하였다. 教授는講義案을作成하고 Bibliography을添付하여 그중에서必讀

(45) 日本文部省大學學術局情報圖書館課,昭和42年度大學實態調查結果報告, (1969.3), p.61.

(46) 上掲書, p.68.

(47) 近川證子, “基督教大學圖書館における指定圖書制度”, 圖書館雜誌, Vol.64, No.5 (1970), pp.200—202.

書를 指定한다. 學生은 이 指定된 冊을 읽고 講義에 出席하거나 혹은 補習을 위해 읽는다. 受講科目的 指定圖書의 目錄은 授業전에 가지고 있다. 한 편 圖書館에서는 教授에게 指定圖書를 學期의 開始 2週間前에 要求하여 이를 指定圖書를 配架한다. 配列은 指定한 教授名의 ABC 順으로 하였다. 그當時의 42名의 教授에 의한 指定圖書는 約 1,000冊이었다. 當時 教授數는 53名, 學生 700名, 圖書館藏書는 約 80,000冊이었다. 複本은 最高 學生 8名에 1冊까지 備置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貸出閱覽은 館內閱覽 2時間과 Overnight loan, 1日間, 3日間 等의 3種類로 되어 있고 期限이 지나면 延滯料를 받고 있다.

2) 東京大學附屬圖書館⁽⁴⁸⁾

日本에서 指定圖書制度의 歷史가 가장 오랜 이 圖書館은 故岸本英夫에 의하여 指定圖書를 한層 增加시켰다. 새로운 大學制度에 있어서 學習準備의 基本方針으로부터 불 때 圖書館의 指定圖書는 不可決하다는 見地로서 中央圖書館은 勿論 教養學部圖書館, 醫學圖書館, 農學圖書館에도 指定圖書制度를 強力하게 實施하도록 하였다. 中央圖書館에서는 그때까지 一般閱覽室 500席과 指定圖書閱覽室 300席의 開架式이 3層에 設置되어 있으나 一般閱覽室을 改修하고 中央部에 3萬冊 收容이可能な 書架를 開架式으로 設置하고 指定圖書와 一般指定圖書를 配列하여 340席의 開架閱覽室을 設置했다.

3) 九州大學中央圖書館⁽⁴⁹⁾

昭和 37年度(1962—63)부터 指定圖書制度를 採用하여, 1講座에 1萬 5千冊부터 2萬冊의 範圍내에서 學部(文, 教育, 法, 經, 理, 工, 農)의 專任講師以上의 教授에게, 指定圖書의 推薦을 依賴하여 왔다. 指定圖書利用 統計에 의하면 1人當 利用回數는 昭和 37年度(1962—63) 3.5回, 昭和 38年(1963—64) 5.9回, 昭和 39年度(1964—65) 7.3回로 되어 있다. 一般的으로 理科系學科의 指定圖書利用度가 높은데 比하여 文科系學科의 指定圖書가 그리 利

(48) 岸本英夫, “東京大學附屬圖書館 近代化のめざすもの”, 圖書館雜誌, Vol. 57, No. 2 (1963), pp. 49—53.

(49) 澤本孝久, 前掲書, p. 174.

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東京學藝大學附屬圖書館⁽⁵⁰⁾

昭和 37年(1962)부터部分的으로 實施되어 온 후 昭和 41年(1966)부터 文部省의 指定圖書制度 實驗校의 하나로 되어 特別豫算을 2年에 걸쳐 받고 本格的인 形態로 實施되어 오고 있다.

指定圖書는 必讀書以外에 參考圖書도 包含되어 있고 現在는 1—2學年生의 受講科目을 中心으로 實施되고 있으나 將來에는 3—4學年の 科目에 까지도 擴大시킬 豫定이라 한다. 指定圖書의 標準은 1科目當 5種類가 普通이고 受講學生 10名에 1冊의 複本(最高 30冊 最低 2冊)을 準備하고 1冊當 單價를 平均 1,000圓으로 해서 豫算을 세우고 있다. 申請圖書는 教授가 決定하지만 複本數는 學生數와 豫算을勘案하여 圖書館에서 調整한다.

指定圖書 約 1萬冊(語學 tape, record 包含)을 2層의 指定圖書室에 모아 두고 科目別, 教授別로 配列하고 있다. 貸出은 館內貸出을 1回에 3冊以內로 하고 館外貸出이 全體의 92%로 압도적 多數를 占하고 있다.

利用度를 보면 昭和 41年度에 12,080冊, 42年度에 21,463冊, 43年度에는 21,973冊으로 약간씩 增加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美國과 日本의 指定圖書制度의 起源과 實態를 文獻調査를 通하여 알아 보았다.

III.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指定圖書制度

1. 指定圖書制度의 現況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서 指定圖書制度를 實施한 時期는 1950年代라고 하겠다. “延世大學校 圖書館에서는 1956年 指定圖書制度를 國내에서 처음으로 始作하였다”라고 하였으며,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에서는 1955年에 圖書館에

(50) 田嶋邦二, “東京學藝大學圖書館の 指定圖書制度について”, 圖書館雜誌 Vol. 64, No. 5(1970), pp. 200—202.

指定圖書를 備置해 줄 것을 要請한 事實이 있다”⁽⁵¹⁾라고 하였다.

韓國圖書館協會의 1971年度 全國圖書館 實態調查⁽⁵²⁾에 따르면 71個 調查對象 圖書館中에서 指定圖書制度를 實施하고 있는 大學은 24個館(33.81%)이고, 間는 圖書館이 47個館(66.19%)으로 約 66%는 指定圖書制度를 實施하고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75年 5月에 洪香姬의 서울市內 所在 4個大學校 즉, 西江大學校, 延世大學校, 梨花女子大學校, 中央大學校의 圖書館에서 實施하고 있는 指定圖書制度 運營의 現況을 “大學圖書館 指定圖書制度에 關한 研究”라는 論題로서 具體的으로 調查研究 發表한 바가 있다. 本 研究는 高等教育改革을 위한 實驗大學에서는 高等教育의 質的向上을 위해 教授方法의 改善이 있어야 하고 教授方法의 改善을 위해서는 반드시 指定圖書制度가 實施되어야 한다고 보고, 實驗大學을 實施하고 있는 國立大學校 6個校, 私立大學校 6個校 圖書館을 選定하여 指定圖書制度의 運營實態를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指定圖書制度實施年度 및 그 現況

指定圖書制度를 처음으로 實施한 圖書館은 1965年度부터가 1個館, 1967年 1個館으로 60年代부터 始作한 圖書館은 16.66%에 不過하고, 實驗大學을 實施하기 始作한 73年 以後부터 指定圖書制度를 實施한 圖書館이 絶對 多數로 10個館(83.33%)이다.

指定圖書制度의 實施와 實驗大學과의 關係를 살펴보면는 實驗大學과 關係 없이 圖書館 自體에서 指定圖書制度를 運營하기 始作한 圖書館과 實驗大學으로 因하여 始作한 圖書館이 각각 6個館(50%)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實驗大學 以前에도 指定圖書制度가 圖書館奉仕의 重要한 活動임을 보이고 있으며, 實驗大學으로 因하여 모든 圖書館이 指定圖書制度를 運營하여 高等教育改革의 方向으로 圖書館을 運營하고 있다고

(51) 洪香姬, 前揭書, p. 39.

(52) 한국도서관협회편, 전국도서관 실태조사 上卷,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1), p. 35.

하겠다.

(2) 指定圖書室의 設置場所 및 運營方法

指定圖書室의 設置는 中央圖書館에 7個館(58.33%), 各單科大學 또는 分館이나 分室이 5個館(41.66%)으로 되어 있으며, 實驗大學으로 因하여 分館 등을 두개 된 圖書館이 4個館이나 된다. 이는 實驗大學이 되므로서 課題圖書室을 두어야 한다는 方針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指定圖書制度의 運營方法으로서는 開架式 5個館(41.66%)이 가장 많고, 折衷式 4個館(33.33%), 閉架式 2個館(16.66%), 無答 1個館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開架式이 많아 學生들이 自由로이 資料에 接近할 수 있어 좋으나 開架式 方法으로 야기되는 問題點도 고려해야 하겠다.

擔當部別로 볼 때 獨立된 指定圖書室, 貸出部가 각각 4個館(33.33%)이고 參考部, 其他가 각각 2個館(16.66%)으로 되어 있으며 獨立된 指定圖書室을 設置하지 못한 圖書館이 66.66%라는 多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問題點이라 하겠다.

閱覽과 貸出에 있어서는 閱覽은 室內閱覽 8個館(66.66%)으로 가장 많고, 2時間 閱覽이 2個館(16.66%), 3~4時間과 無答이 각각 1個館(8.33%)이고, 貸出은 Overnight loan 5個館(41.66%)이 가장 많고, 貸出禁止가 4個館(33.33%), 1日貸出이 2個館(16.66%)으로서 대상의 대부분이 室內閱覽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며 必讀者를 위해서 Overnight loan을 實施하고 있는 圖書館도 있음을 알 수 있으나 可能하다며는 室內閱覽을 原則으로 하되 Overnight loan을 모든 圖書館에서 實施함이 바람직하다.

(3) 指定圖書制度의 運營範圍

指定圖書制度의 運營範圍를 實驗大學과 關係없이 全大學에 適用한다가 9個館(75%), 實驗大學에만 適用이 2個館(16.66%)이고 無答이 1個館으로 나타난 것은 第2項에서 實驗大學과 關係없이 指定圖書制度를 運營하고 있다가 50%를 보이고 있던 것이 實驗大學이 되므로서 全大學에 擴大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指定圖書의 指定科目 範圍는 學部全科目이 11個館(91.66

%), 大學院까지가 2個館, 于先 教養科目만 指定이 1個館으로 나타나고 있다.

指定圖書의 種類範圍에서는 國內單行本이 11個館(91.66%)으로 가장 많고 英書單行本과 日書單行本이 各各 10個館(83.33%)이고, 其他 外國圖書가 6個館(50%), 國內學術誌 및 論文이 4個館(33.33%), 外國學術誌 2個館(16.66%), 內容에 制限이 없다가 1個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율을 봄 때 國內單行本 100%나 英書單行本의 91.66%는 肯定이 가겠으나 日書單行本이 91.66%의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는 것은 쉽게 理解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고, 國內學術誌의 33.33%나 外國學術誌의 16.66%는 바람직한 內容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指定圖書의 內容을 보며는 專攻에 알맞다가 64.98%로 가장 많고, 教養圖書가 11.21%, 教授研究用이 10.04%, 擔當科目과 關係없는 圖書가 5.44% 잘 모르겠다. 8.33%를 나타내고 있어 司書들의 正確한 裁斷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35.02%라는 많은 比率이 指定圖書와는 關係없는 圖書가 추천된다는 것은 아직도 教授들이 指定圖書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다는 것을 보이는 結果라고 하겠다.

(4) 指定圖書購入豫算

指定圖書購入의 豫算을 項目別로 보면 全體 資料購入費가 5個館(41.66%)로 가장 많고, 指定圖書購入費, 學生用圖書購入費 및 校費가 各各 2個館(16.66%)이고, 學科實驗實習費가 8.33%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는 아직도 指定圖書購入을 위한 圖書館의 豫算制度가 確立되어 있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

指定圖書購入費의 充足度는 많이 不足하다 5個館(41.66%), 좀 不足하다 3個館(25%)이고, 充分하다가 4個館(33.33%)으로 되어 있으나, 66.66%라는 많은 圖書館이 資料購入費의 不足을 나타내고 있다. 充實한 指定圖書制度의 確立을 위해서 積極的인 豫算의 뒷 받침이 時急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指定圖書購入費의 財源은 國庫나 財團에서 別途 配定하여 圖書館

에서 實行豫算을 編成함이 좋다. 6個館(50%)으로 가장 많고, 學生自律經費 3個館(25%), 學科實驗實習費, 잘 모르겠다 및 無答이 각각 8.33%로 나타난 것을 볼 때 指定圖書의 購入豫算是 圖書館으로 配定하여 實情에 맞게 再編成함이 妥當하다고 하겠다.

(5) 指定圖書의 備置現況

指定圖書의 備置現況에 對한 設問에 無答이 5個館(41.66%)이나 된다는 것은 指定圖書制度의 運營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準備 없이, 正確한 記錄도 없이 莫然한 運營을 하고 있다는 證據가 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重大한 問題라고 하겠다.

그리고 指定圖書로서 申請한 資料로서 備置한 現況을 보면 國內單行本을 80%까지 備置한 圖書館이 50%로서 半數에 不過하며 外國圖書인 境遇 50%까지 備置한다가 不過 16.66%라고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指定圖書制度의 甚 問題點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指定圖書로 申請한 資料를 備置할 수 없는 理由로서는 資料를 購入 또는 收集할 수 없다가 8個館(66.66%), 資料購入費의 不足 6個館(50%), 一定한 範圍의 制限이 16.66%이고 無答 8.33%을 보이고 있는데, 答을 두 개 以上한 圖書館도 있겠으나, 資料를 購入이나 收集을 할 수 없다는 甚 問題이나 第4項에서 指定圖書購入費가 不足하다의 66.66%를 다시금 證明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指定圖書의 利用現況

指定圖書의 利用現況은 아주 적다가 6個館(50%)로서 가장 많고, 普通이다 3個館(25%)이고, 아주 많다 16.66% 無答이 8.33%로서 指定圖書의 利用이 많지 않은 圖書館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學期別 利用統計를 要求하였던 바 이에 回答하지 않은 圖書館이 50%나 되며 이는 第5項의 指定圖書의 備置現況에서 無答이 41.66%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아무 記錄이나 事務處理 없이 莫然한 指定圖書制度를 運營하고 있는 圖書館이 많음을 나타나고 있는 結果라 하겠으며 大學圖書館奉仕中에서 가장 重要的 指定圖書

를 擔當하고 있는 司書들의 큰 責任이요 時急히 시정하여야 할 問題라고 하겠다.

(7) 指定圖書의 指定節次 및 그 內容

指定圖書의 目錄 提出 方法으로서는 圖書館에서 學期前에 教授에게 要求 한다가 8個館(66.66%)으로 가장 많고 學科別로 圖書館에 提出한다. 3個館(25%), 教授가 自進하여 提出한다의 1個館(8.33%)의 順으로 되어 있다. 가장 좋은 方法은 教授가 自進하여 指定圖書의 目錄을 圖書館에 提出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도 問題가 많은것 같다.

그리고 指定圖書의 目錄作成에 있어서 內容의 記載가 대체로 正確하다가 7個館(58.33%), 內容의 記載가 不正確하다가 4個館(33.33%) 無答 8.33%이며, 目錄提出期限을 잘 안지킨다. 8個館(66.66%), 대체로 良好하다 3個館(25%), 無答이 8.33%임을 볼 때 教授들의 指定圖書制度에 對한 協力이不足하며 誠實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指定圖書의 複本數는 어느 程度가 좋겠느냐에는 受講生의 10%가 2個館(16.66%), 5% 및 20%가 각각 8.66%이고, 受講生에 關係없이 5冊이 25% 2冊 및 3冊이 각각 16.66%이고 5名에 1冊이 8.33%를 나타내고 있다. 이 複本數의 問題는 여러가지 結果가 나온 것과 같이 一定한 數를 定할 수 없고 各 圖書館의 事情에 따라 알맞도록 定할 問題라 하겠다.

指定圖書目錄의 提出時期은 언제가 좋겠느냐에는 學期前 2個月이 50%로 가장 많고, 學期前 1個月, 3個月 및 每學期初, 無答이 각각 8.33%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學期前 2個月이 가장 適切한 것 같으나, 申請한 資料를 購入 또는 收集할 수 없을 때 다른 資料로 代置할 時間과 새로 收集한 資料의 整理期間들을勘案한다면 2—3個月程度의 여유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8) 指定圖書制度運營을 위한 協力關係

大學 또는 學科가 實驗大學을 實施할 때 課題圖書室 設置 등을 위하여 圖書館과 事前에 協議하는가에 있어, 協議한다와 協議없다가 각각 33.33%,

事後에 通報가 16.66%이고, 無答이 亦是 16.66%임을 볼 때, 課題圖書設置問題를 事前에 圖書館과 協議敘이 決定하는 등이 50%나 되며 無答을 協議 없는 것으로 본다며는 66.66%라는 多數가 圖書館과 協力を 하지 않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指定圖書로서 申請한 資料를 備置할 수 없을 때에는 圖書館에서 어떠한 措置를 하느냐에, 다른 資料로 代置하도록 한다가 58.33%이고, 備置하지 못함을 通知한다와 아무 處理없다가 각각 16.66%, 無答 8.33%로 나타난 것을 볼 때, 圖書館自體에서도 教授와 協力を 하지 않는 圖書館이 41.66%나 된다는 것은 司書들이 教授에게 指定圖書制度의 運營에 對해서 協力を 하지 않으며 責任을 다하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指定圖書制度에 對한 認識에 있어서 잘 認識하고 있는 것 같다가 教授, 學生 共히 8.33%이고 司書는 66.66%, 大體로 認識하고 있는 것 같다가 教授 41.66%, 學生 25.0%, 司書 16.66%이며, 認識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가 教授 41.66%, 學生 50%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教授가 指定圖書制度에 對한 認識不足 41.66%나 되고 學生이 50%나 된다는 것은 아직도 指定圖書制度에 對한指導나 啓蒙이 많이 必要함을 나타내고 있어 學校當局이나 圖書館이 教授와의 協力を 위한 方法을 講究하여야 하겠다.

(9) 指定圖書制度運營結果에 對한 措置

指定圖書制度의 運營 結果에 對하여 圖書館에서는 어떻게 處理하고 있는데 對하여 每學期 實態를 分析評價하여 改善策을 講究한다. 25%이고,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分析評價한다가 50%, 無答이 25%이나 지금까지의 設問紙 分析으로 보아 運營實態를 分析評價하여 改善策을 講究하도록 圖書館에서는 많은 努力を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指定圖書制度의 運營 結果를 어디에다 報告하느냐에는, 總長, 教務處長에게 각각 16.66%, 報告없음 25%, 圖書館運營委員會에 8.33% 無答이 41.66%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指定圖書制度運營에 關한 體系가 서 있지 않는 것 같다. 報告를 반드시 最上級者에까지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나, 制度의 確立이나 合理的인 運營을 위하여서는 아직도 學

校當局의 協力を 얻도록 協議를 하여 對策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2. 指定圖書制度 實施의 諸問題點

위의 12個 大學圖書館을 對象으로 指定圖書制度의 運營實態를 調查한 結果 問題點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1. 指定圖書의 管理面에서 볼 때 貸出係 혹은 參考係에서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圖書館이 많으며 獨立한 指定圖書室을 가지지 못하고 重要한 奉仕를 兼務를 하고 있는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2. 指定圖書制度를 全大學 全學科에 適用하고 있으나 圖書館의 奉仕與件이 造成되어 있지 않아 無理한 運營으로 因하여 보다 效果的인 結果를 가져오지 못하는 實情이다.
3. 指定圖書의 内容이 專攻科目과 맞지 않는 圖書가 많이 備置되어 있어 利用되지 않는 資料가 많으며, 效果的인 利用을 하지 못하는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4. 指定圖書로서 申請한 資料를 收集할 수 없는 問題點도 있으나 指定圖書購入費의 不足으로 資料를 購入할 수 없는 큰 問題點을 가지고 있어 資料購入費의 確保가 時急한 과제라 하겠다.
5. 指定圖書를 擔當하고 있는 司書들이 몇몇 大學圖書館을 除外하고는 誠意不足으로 因하여 各種 利用統計 및 備置 記錄이 없는 指定圖書制度運營의 不實을 가져오고 있다.
6. 指定圖書의 目錄作成의 不實과 目錄提出期限의 지연으로 指定圖書를 備置하는데 많은 支障을 주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다.
7. 指定圖書制度에 對하여 教授, 學生 共히 認識이 不足함으로 이들에 對한 啓蒙이나 利用指導를 하여야 할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8. 指定圖書制度에 對한 大學當局, 教授 및 圖書館이 相互協力を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問題點이라 하겠다.
9. 指定圖書制度運營結果에 對하여 圖書館自體에서 分析評價하여 改善策

을 마련하는데에 對한 誠意가 不足한 圖書館이 많은 것은 指定圖書制度運營改善을 위해 많은 努力を 하여야 할 問題라 하겠다.

IV. 指定圖書制度實施의 改善方案

1. 指定圖書制度의 管理運營面의 改善方案

(1) 獨立된 指定圖書室의 設置

大學圖書館의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하는 指定圖書制度 徒속이나 高等教育改革의 한 方案으로서 採擇하여 運營하고 있는 이 制度가 獨立된 資料室을 마련하지 못하고 貸出係나 參考係에서 兼務로서 奉仕業務를 擔當하고 있다는 것은 教育的 機能을 發揮하여야 할 本然의 使命을 다할 수 없으므로 獨立된 指定圖書室을 마련하여 兼務가 아닌 專擔司書를 配置하여야 하겠다.

(2) 指定圖書制度의 段階的 擴充

實驗大學과 關係없이 指定圖書制度를 實施하는 圖書館이 50%였으며, 實驗大學으로 因하여 全體 大學圖書館이 이 制度를 實施하고 있으나 運營內容을 볼 때 不充分한 點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形式的인 指定圖書制度를 實施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徒속이나 여러가지 與件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實情인데도 全大學 全學科 全學年에 이 制度를 適用하고 있는 圖書館이 많은 것은 徒속의 指定圖書制度의 不實을 招來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段階的으로 즉, 實驗大學을 實施하는 첫해는 一學年에만 適用하든가, 教養科目만을 于先 對象으로 한다든가, 4學年까지 實驗大學으로 되어진 大學이라도 自體 圖書館의 여러가지 與件을勘案하여 大學當局과 또는 各學科의 教授와 協議하여 學科를 選擇的으로 適用하여 漸次的으로 範圍를 擴大하여 가는 方法으로 指定圖書制度를 運營함으로써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겠다.

(3) 指定圖書의 利用實態評價 實施

圖書館에 아무리 많은 指定圖書를 備置하더라도 學生들이 利用하지 않으

면 教育效果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貴重한 資料의 死藏이요豫算의 浪費 단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備置된 指定圖書의 보다 効果의 利用을 圖謀하기 위하여서는 恒常 資料의 利用 現況을 調査分析하고 그 結果를 評價檢討하여 改善策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利用된 資料의 各種 統計는 勿論 備置하고 있는 資料를 各學科, 學年, 教授別의 種數, 冊數 등의 記錄을 恒常 維持하고 있어야 하겠다.

2. 指定圖書制度의 內容面의 改善方案

(1) 指定圖書의 選定 및 收集上의 改善

指定圖書로 申請한 資料가 아무리 優秀하더라도 教授의 講義內容과 學生들의 課題處理에 適合한 資料로서 嚴選되어야 하겠다. 또한 아무리 優秀한 資料로 嚴選되었더라도 이 모든 資料를 收集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方法으로 指定圖書制度를 運營하더라도 教育效果를 期待할 수 없으므로 資料選定 및 收集을 위한 委員會의 構成 등과 같은 對策을 講究하여야 하겠다.

(2) 指定圖書購入費의 確保

高等教育改革의 方法으로서 指定圖書制度를 實施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國家百年大計를 위한 教育計劃이므로豫算의 不足으로 因하여 教育改革의 차질을 招來할 수는 없으므로 國立大學校 私立大學校를 莫論하고 國家에서 國費로서 指定圖書를 購入할 수 있는 充分한豫算措置가 있어야 하겠다.

(3) 指定圖書와 教育課程의 連絡方法

指定圖書의 利用이 低調한 것은 學生들이 自由스럽게 資料에 接近하도록合理的으로 運營을 하지 못하는데도 原因이 있겠으나 보다 더 重要한 原因은 指定되어진 資料와 教育課程과의 關係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教育課程과 關係가 있는 資料가 指定되어야 하겠으므로 指定된 資料가 教授의 講義內容과 關聯을 가지고 課題를 解決할 수 있도록 教授들에 의한 指定圖書와 教育課程의 連絡을 위한 評價會 등을 構成하여야 하

겼다.

3. 指定圖書制度 實施을 위한 協力體制確立

(1) 大學當局과 教授 및 圖書館의 相互協力

教授, 學生들의 指定圖書制度에 對한 認識不足은 勿論이요 大學當局에서
도 誠意가 없는 現實을勘案할 때, 圖書館에서만 一方的으로 指定圖書制度
를 運營하더라도 큰 効果를 期待할 수 없다. 그러므로 大學當局 教授代表
및 圖書館側과 協力を 위한 運營委員會를 構成하여 協議體를 마련함으로써
相互協力와 理解로서豫算의 確保問題, 指定圖書의 選定에 있어서나, 目錄
의 適期提出 및 教育課程과의 連絡도 이루어질 것이다.

(2) 教授와 司書와의 協力

政策의으로 協議가 이루어지더라도 指定圖書制度의 實施에 있어서의 當事
者인 教授와 司書 그리고 學生의 參與없이는 効果의in 運營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教授와 司書는 協力하여 指定된 資料의 備置 및 資料의 更新 새로
운 資料의 情報提供, 資料의 收集上의 問題, 學生들의 利用狀況 등을 隨時
로 分析評價하며, 또한 司書는 教授들에게 指定圖書制度의 教育的 効果를
認識시키며, 學生들을 위한 指定圖書 利用案내를 教授를 通하여指導할 수
있도록 協力を 얻음으로써 學生들의 指定圖書의 利用率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V. 要 約

本 論文은 現在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指定圖書制度 運營에 關한 實態를
分析 考察하고 問題點을 摘出하여 改善方向을 提示하였다.

大學圖書館은 그 大學의 教育과 研究目的을 遂行하기 위한 重要한 知的資
料源이며, 教育機關으로서 學生, 教授 및 研究者가 그들의 教育과 研究活動
에 必要한 資料를 滿足스럽게 利用할 수 있도록 奉仕하는데 있다. 오늘날

大學教育의 特徵은 教授의 講義를 為主로 하는 受動的 注入式 教育이 아니
라 學生의 創意力, 批判力, 思考力, 判斷力を 重視하고 教授는 問題를 提示
하여 學生自身이 스스로 問題를 解決하도록 하는 自主學習에 重點을 두고
있다. 이리한 授業의 一部를 構成하고 講義 혹은 研究內容에 있는 課題를
解決하도록 閱讀을 課하는 奉仕制度를 指定圖書制度라고 하겠다.

이 指定圖書制度는 大學圖書館이 學生에게 對한 가장 重要한 圖書館奉仕
이며, 特히 우리나라의 高等教育改革으로 實驗大學에 課題圖書室을 두도록
되어 있어 關係者들의 關心을 모으고 있는 大學圖書館의 重要한 奉仕制度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指定圖書制度는 大學圖書館이 教授의 授業計劃에 直接 參加
하고 그 授業進行을 돋는 가장 効果의인 奉仕制度로서 大學自體의 教育計劃
의 基本이 된다고 하겠다. 大學教育의 目的是 教育課程이 어떻게 計劃되고
運營되는가 하는 것이 重要的 問題가 된다. 그러므로 大學education의 發展이나
改革은 大學education課程의 檢討와 改善에 期待할 수 밖에 없는데 大學의 教育
課程은一般的으로 過去指向性을 띠고 있다. 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傾
向이 濃厚하다. 이리한 見地에서 볼 때, 大學改革의 關鍵은 教授指向의
education課程으로부터 education課程指向의in 教授陣으로 轉換하여야 하겠다. 아무
리 未來指向性의in 教育課程이라 하더라도 教授方法에 따라 學習效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므로 効果의in 學習活動은 學生들의 自發의in 學習이어야 하
고 獨立의in 研究의 機會를 充分히 출 수 있는 教授方法이 採擇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現代 大學education에서 더우기 大學education改革에 있어서 教育課程이나
教育方法의 改善에 이 指定圖書制度의 實施야말로 반드시 導入되어야 할 것
이며, 奉仕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도록 發展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래서 本 論文에서는 指定圖書制度의 合理의in 運營이야말로 大學圖書館
의 重要的 教育的 機能을 發揮할 수 있다고 보아 그 實態를 分析 考察한 結
果 現實的으로 提起되는 問題點을 外國의 制度와 文獻을 通하여 比較檢討하

36 도서관학 논집

여 우리나라 實情에 맞도록 制度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改善策을 提示하였다.

첫째, 指定圖書制度의 管理運營面의 改善方案

둘째, 指定圖書制度의 內容面의 改善方案

세째, 指定圖書制度運營을 위한 協力體制確立의 改善方案을 論하였다.

그러므로 本 論文은 大學教育의 心臟部의 機關인 大學圖書館에서 가장 重要한 教育的 機能을遂行하는 指定圖書制度가 合理的으로 運營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이며 앞으로 大學圖書館의 指定圖書制度 確立에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參 考 文 獻

註로써 代身替

附 錄

調查對象 大學圖書館 (가나다순)

〈國立大學校〉

慶北大學校 圖書館
釜山大學校 圖書館
서울大學校 圖書館
全南大學校 圖書館
全北大學校 圖書館
忠南大學校 圖書館

〈私立大學校〉

建國大學校 圖書館
啓明大學校 圖書館
檀國大學校 圖書館
淑明女子大學校 圖書館
嶺南大學校 圖書館
弘益大學校 圖書館

A Study of Reserve Book System

Ko, Sung Soo*

(Abstract)

This paper intend to analyze, review and point out the actual conditions of "Reserve Book System" of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then to present several proposals.

I took six national universities and six private universities as researching objects and the materials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1) There are so many libraries which have no seperate reserve books room, while every colleges, and their departments are putting into forces the reserve book system. This makes many unresonable problems.

2) Many volumes were not adequate to the courses of each department and so many problems arose to set up reserve books owing to 'he lack of library budget.

3) Insincerities of professors and librarians make no good conditions for the reserve book system.

4) For insufficiency of understanding about the reserve book system of professors and students with university authorities, we must persuade and guide them about this system.

5) We must evaluate about the problems of the reserve book system. I show the methods which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s of this system in the following.

1) As to methods of improving the field of menagement for running about the reserve book system,

a)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reserve books room.

b) Gradual expansion of the reserve book system.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c) Evaluation of the actual using of reserve books.
- 2) As to contents to improve the reserve book system,
 - a) Improving the selection method of reserve books.
 - b) Increasing the library budget enable to purchase more reserve books.
 - c) Making more close connections between the curricula and reserve books.
- 3) Settlement of coordinating system for carrying out reserve book system,
 - a) We must have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y authorities, faculties and libraries.
 - b) We must have co-operation between professors and librarians.